

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28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6월 7일

발 의 자 : 나상희 의원

찬 성 자 : 임정옥, 이수옥, 윤인숙,
유영주, 최재란,
서병완 의원 (6명)

1. 제안이유

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친화도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조).
- 나.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겸임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.
- 다.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.
- 라.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, 해촉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의2, 안 제10조의 3).
- 마. ombudsman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

라. 기타

1) 개정안 : 별 첨

2) 조례안 예고 : 2021. 6. 9. ~ 2021. 6. 13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아동친화도시”란”을 ““아동친화도시”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권익을”을 “권리를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4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5.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국장, 보건소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

3.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
4.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의 아동업무 관계자

5. 아동보호자 대표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,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아동친

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추진위원회 운영)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

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⑦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추진위원회의 장기불참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이 추진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5. 위원이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제20조 전단 중 “아동참여위원회”를 “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옴부즈퍼슨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(이하 “옴부즈퍼슨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.

1.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

2. 아동의 침해 사례 발굴 및 제언

3.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, 제도, 서비스 개선 도모

③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

2.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

3.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및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위로 새로운 옴부즈퍼슨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
⑤ 읍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.

1.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⑥ 읍부즈퍼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⑦ 구청장은 읍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,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“아동친화도시”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동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“아동친화도시”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.
<p>제4조(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) 구 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3. ~ 5. (생 략) 	<p>제4조(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)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권리를 -----. 3. ~ 5. (현행과 같음)
<p>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서울</p>	<p>제9조(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</p>

현행	개정안
<p>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</p>	<p>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.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.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.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6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국장, 보건소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1.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2.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</p> <p>3.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</p> <p>4.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의 아동 업무 관계자</p> <p>5. 아동보호자 대표</p> <p>6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,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⑦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</u> <u>2.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</u> <u>3.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</u> <u>4.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</u> 	<p><u>제10조(추진위원회 운영)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④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12 1003 376 1041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47 331 1422 640"><u>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 data-bbox="847 667 1422 909">⑧ <u>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1003 1422 1245"><u>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</u></p> <ol data-bbox="847 1272 1422 2047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 <u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 <u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u> <u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</u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12 1003 376 1043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74 331 1422 443"><u>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47 465 1422 645">5. <u>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47 667 1422 913">② <u>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1003 1422 1249">제10조의3(위원의 해촉) <u>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data-bbox="847 1272 1422 2056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</u> <u>2.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 <u>3. 위원이 추진위원회의 장기불참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<u>4. 위원이 추진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u> <u>5. 위원이 제10조의2제1항 각 호</u>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위탁) 구청장은 <u>아동참여위원회</u>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</u></p> <p>제20조(위탁) ----- <u>참여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1조(옴부즈퍼슨 운영 등) ① <u>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(이하 “옴부즈퍼슨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.</u></p> <p>1. <u>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</u></p> <p>2. <u>아동의 침해 사례 발굴 및 제언</u></p> <p>3. <u>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, 제도, 서비스 개선 도모</u></p> <p>③ <u>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</u> <u>2.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</u> <u>3.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및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<p>④ <u>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궐위로 새로운 옴부즈퍼슨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</u></p> <p>⑤ <u>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</u> <u>2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 <u>3.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u> <p>⑥ <u>옴부즈퍼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⑦ <u>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21조</u> (생략)</p>	<p><u>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,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2조</u> (현행 제21조와 같음)</p>

관계법령

「아동복지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

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
제4조

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·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